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31

2019년 9월 6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19년 8월 7일

다. 회 부 일 : 2019년 8월 13일

라. 상 정 일 :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동안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금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임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제1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市 직영 시, 기존 공무원 인력 중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나, 공무원의 정원과 인력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위탁사무 내용

○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

○ 가출청소년 상담·교육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운영(시설물·장비 등)

○ 그 밖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및 시설 규모

주 소	호수	전용면적	비고
도봉구 도당로 17길 34 (방학동)	301	44.32㎡	
	302	44.32㎡	
도봉구 도봉로 133길 8-18 (쌍문동)	301	57.43㎡	
	302	50.63㎡	

○ 개소일자 : 2019.10.(예정)

○ 이용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장기적인 보호와 자립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남자 4명, 여자 4명)

5)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9.10.01. ~ 2022.09.31.)

○ 위탁업무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운영

○ 소요예산 : 353,594천원

- 인건비 192,604천원, 운영비 140,183천원, 사업비 20,807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6)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동의안은 도봉구(방학동, 쌍문동)에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이하 '자립지원관')을 신규 설치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조례[1]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운영

○ 위탁사무 내용
-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
- 가출청소년 상담·교육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운영(시설물·장비 등)
- 그 밖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개소일자 : 2019. 8.(예정)

○ 이용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장기적인 보호와 자립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남자 8명, 여자 8명)

○ 위탁기간 : 3년(2019.10.1. ~ 2022.9.31.)

○ 위탁업무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운영

○ 소요예산 : 353,594천원(2019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의 활동,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사무는 가출청소년의 보호사업 및 자립지원관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임.

○ 자립지원관 운영은 전문지식 및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사·검사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비권력적 사무이고,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고 있고[2],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3]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자립지원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공공성·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상담·자립·자활 등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피하여, 개소 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얻는 실익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문성, 경제적 효율성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시민의 만족도가 핵심이라고 하겠음.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9 (생략)

※ 자립지원관

-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입소자격 : ① 쉼터 등 퇴소 청소년 ②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 중장기 청소년 쉼터는 생활지원의 개념이라면, 자립지원관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공간임.

○ 본 동의안(의안번호 931번)은 제287회 임시회에 제출된 시립자립지원관 민간위탁동의안(의안번호 711번)과 유사한 건으로, 자립지원관이 설치될 예정지 3개소 중 1개소(노원구)는 당초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으나, 건립된 임대주택의 용도가 자립지원관으로 변경되어 본래 주택 건설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는 의회의 지적[4]으로, 금번 임시회에 자립지원관의 위치를 조정하여 다시 제출되었음.

○ 자립지원관은 2개소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며,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에 설치되며, 1개실마다 2명이 사용하도록 하여 총 8명(남성 4명, 여성 4명)이 입소할 예정에 있으며, 남녀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이를 일괄 위탁할 예정인바, 남녀시설의 일괄위탁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4) ○송재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건물이 조성될 당시의 목적이 임대주택이에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이 있지요.　조성된 목적이 임대주택이고, 그 임대주택은 현재로 보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고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와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목적에 지금 시립청소년 자활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거고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의 소재지 및 규모 〉

주 소	호수	전용면적
도봉구 도당로 17길 34 (방학동)	301	44.32㎡
	302	44.32㎡
도봉구 도봉로 133길 8-18 (쌍문동)	301	57.43㎡
	302	50.63㎡

※ 본 자립지원관의 운영원칙은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것이나, 2019년 미비된 상태로 중장기쉼터의 운영원칙 준용하여 운영할 예정임.

○ 자립지원관은 총 6명(시설장 1명, 자립지원요원 4명, 행정원 1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사무는 자립지원 외에도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4명의 인원으로 자립지원관의 생활관리, 시설관리 및 자립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종사자의 실제 근로 시간을 고려(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서는 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청소년사업 안내)은 자립지원관이 있는 시·도는 중·장기쉼터의 보호기간 종료 후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대한 수정건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정한 사유로 인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퇴소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출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7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513P 발췌)
중장기쉼터 퇴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아직 개소 운영되지 않는 시도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시까지 한시적으로 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 쉼터의 퇴소자가 자립지원관 입소 대상이 되나, 자립지원관의 총 수용인원은 8명으로, 추가설치 및 시설확대 등 규모의 적정성과 지역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단기 및 중·장기 쉼터 입소자의 수요를 감안하여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시립자립지원관의 정원은 8명이나, 인천은 60명, 경기도는 50명 규모로 운영예정임.
※ 서울시 소재 쉼터의 정원은 218명이며, 일시·단기 및 중·장기 쉼터는 정원이 10배 가량의 인원이 입·퇴소를 반복하고 있는바, 자립지원관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전국 청소년 자립관 현황 〉

지역	소재지	임소대상	입소정원(명)		비 고
서울	노원구	남	4	8	2019. 10월 예정
	도봉구	여	4		2019. 10월 예정
인천	부평구	남	29	60	2018. 1월
	남동구	여	31		2018. 1월
경기 북부	의정부	남, 여	25	50	2018.10월
경기 남부	군포	남, 여	25		2019년 개소준비 중

〈 서울시 쉼터 현황 〉

	시설명	유형	소재지	입소정원		직원 현황
				남	여	
합 계				218		130
				102	116	
시립 (13)	용산일시	일시	용산구 만리재로	5	5	11
	드림일시	일시	강남구 삼성동	10	10	11
	강북드림	일시	강북구 수유동	10	-	10
	서북이동(여우별)	이동	청소년 밀집지역(서북)	7	7	8
	서남이동(우리별)	이동	청소년 밀집지역(서남)	5	5	8
	동북이동(더작은별)	이동	청소년 밀집지역(동북)	5	5	7
	동남이동(작은별)	이동	청소년 밀집지역(동남)	7	7	7
	신림단기	단기	관악구 신림동	20	-	12
	금천단기	단기	강남구 삼성동	-	20	13
	망우단기	단기	중랑구 망우동	-	20	13
	신림중장기	중장기	관악구 난곡동	10	-	5
	금천중장기	중장기	금천구 독산동	-	10	6
	은평중장기	중장기	은평구 불광동	-	10	3
구립 (2)	강남쉼터	단기	강남구 수서동	15	-	7
	은평쉼터	일시	은평구 갈현동	-	10	
민간 (2)	강서쉼터	단기	강서구 화곡동	8	-	4
	어울림쉼터	중장기	강서구 화곡동	-	7	5

○ 다만, 8명 수용인원을 위해 연간 3억 5천만원(국비 1억1천5백만원, 시비 2억3천8백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향후 입소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사업확대에 따른 운용방안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종합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출청소년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자립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자립지원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나, 남·녀 자립지원관 일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평생교육국은 관리·운영능력 및 해당 분야의 탁월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선별성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지도·점검 방안을 강구하여 자립지원관의 개소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2022년 9월은 30일까지만 있어, 위탁기간이 모호하며, 의회는 동의안에 대해 수정할 수 없고, 동의 또는 부동의로만 의결을 할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의회가 하자있는 의결을 하지 않도록 동의안의 제출 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931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금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임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市 직영 시, 기존 공무원 인력 증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나, 공무원의 정원과 인력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위탁사무 내용

○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

○ 가출청소년 상담·교육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운영(시설물 · 장비 등)

○ 그 밖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및 시설 규모

주 소	호수	전용면적	비고
도봉구 도당로 17길 34 (방학동)	301	44.32㎡	
	302	44.32㎡	
도봉구 도봉로 133길 8-18 (쌍문동)	301	57.43㎡	
	302	50.63㎡	

○ 개소일자 : 2019.10.(예정)

○ 이용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장기적인 보호와 자립 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남자 4명, 여자 4명)

○ 위치도

마.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9.10.01. ~ 2022.09.31.)

○ 위탁업무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운영

○ 소요예산 : 353,594천원

- 인건비 192,604천원, 운영비 140,183천원, 사업비 20,807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한경숙 (☎2133-4128)